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개정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 1 조~제 4 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4 조의 2 <u>대출계약 철회</u></p> <p>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 일(이하, “<u>철회기한</u>”이라 한다)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출금액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. 대출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.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(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) <p>③ 제 1 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제 8 조 제 4 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<p>④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</p>	<p>제 1 조~제 4 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4 조의 2 <u>대출계약의 철회</u></p> <p>※ 동 조항은 <u>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</u></p> <p>① 채무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,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	<p>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내용 반영 (대출계약철회권 법제화)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u>청구하지 않습니다.</u></p> <p><u>⑥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1.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⑦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철회기한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,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 다만,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제 5 조~제 19 조 (생략)</p> <p>제 20 조 약관·부속약관 변경 (신설)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,</p>	<p><u>제 4 조의 3 위법계약의 해지</u></p> <p><u>※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</u></p> <p><u>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</u></p> <p>제 5 조~제 19 조 (좌동)</p> <p>제 20 조 약관·부속약관 변경</p> <p><u>※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</u>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,</p>	<p>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내용 반영</p> <p>금융감독원 약관 개선방안 의견 반영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 다만,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	<p>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 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/u></p> <p><u>1.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</u></p> <p><u>3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</u></p> <p>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 다만,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	

■ 시행일 : 2021 년 03 월 25 일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: 적용(단, 위법계약해지권은 기존 가입고객 미적용)